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도입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88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6.
3. 회 부 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등을 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에 공매도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_----- -----제176조, 제178조,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자 등의 신고나 제보를 유인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도”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435조¹⁾는 불공정거래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위법행위를 알게 된 자로 하여금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포상금제도”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는 금융감독원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음.
- 2024년 포상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²⁾, 시세조종³⁾,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예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예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예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채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

부정거래⁴⁾의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사유로 약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음.

[표1] 2024년도 자본시장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만원)

연번	증선위 의결일	지급일	지급액	포상 사유
1	제4차 증선위 (2024. 2. 28.)	2024. 3. 15.	1,710	시세조종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2	제12차 증선위 (2024. 6. 19.)	2024. 6. 21.	1,870	시세조종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3	제12차 증선위 (2024. 6. 19.)	2024. 6. 21.	5,000	부정거래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4	제12차 증선위 (2024. 6. 19.)	2024. 6. 21.	2,750	시세조종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5	제22차 증선위 (2024. 12. 18.)	2024. 12. 23.	3,430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6	제22차 증선위 (2024. 12. 18.)	2024. 12. 30.	4,680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
합 계			19,440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현행법 제448조의2⁵⁾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

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

지, 또는 부정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등을 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성상 내부자 진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의 진술이나 증언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2025년 7월말 기준 이 제도의 적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대상에 공매도 관련 위법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자 또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한 위법행위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령 위반자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공매도 관련 법령 위반자가 자수나 진술 등을 한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공매도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첫째,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이 중 일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은 형벌이 아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므로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의 금지(제180조6)),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7)), 유상증자 및 CB·BW의 취득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제한(제180조의4⁸⁾),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상환기간 제한(제180조의5⁹⁾),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180조의6¹⁰⁾) 등을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등을 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무차입공매도 외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형벌이 아니

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므로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는 자진신고 감면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공매도 관련 규정 및 제재수단

규정		제재수단
조	항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과징금(제429조의3 제1항) <u>형사처벌(제443조 제1항 제10호)</u>
	②	
	③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 법인 : 6천만원, 비법인 : 3천만원
	②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3) - 법인 : 6천만원, 비법인 : 3천만원
	③	과태료(제449조 제3항 제8호의4) - 1,800만원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4) - 법인 : 6천만원, 비법인 : 3천만원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대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과징금(제429조의3 제2항) - 5억원 이하
	②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①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5) - 법인 : 6천만원, 비법인 : 3천만원
	②	- 법인 : 6천만원, 비법인 : 3천만원
	③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6) - 법인 : 1억원, 비법인 : 5천만원
	④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6) - 1억원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과태료(제449조 제1항 제39호의7) - 1억원
	②	

- 둘째, 개정안은 형벌에 대한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감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불법 공매도는 형벌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대상¹¹⁾이기도 하므로, 개정안이 위반자 또는 관련자의 자수 또는 진술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자본시장법」 상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징금 모두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문 의 처

02)6788-5111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자진신고 감면 관련 유사 입법례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2】 무차입 공매도 제재 현황(2025년 4월말 기준)

조사·조치 연도	위반자수	위반자 구분		조치내용 ¹⁾	부과 금액 (억원)
		외국인	국내기관		
2010~2017	86	80	6	과태료(30), 주의(56)	6.6
2018	5	5	-	과태료	75.4
2019	10	9	1	과태료	4.7
2020	4	4	-	과태료	7.3
2021	16	16	-	과태료	8.0
2022	32	25	7	과태료	24.3
2023	37	25	12	고발(2), 과징금(35), 과태료(2)	370.8
	35	23	12	과징금	359.0
	2	2	-	과태료	11.8
2024	29	22	7	과징금(16), 과태료(13)	468.6
	16	11	5	과징금	463.4
	13	11	2	과태료	5.2
2025.4	10	10	-	과징금(9), 과태료(1)	206.2
	9	9	-	과징금	204.2
	1	1	-	과태료	2.0
계	229	196	33	과태료(145억), 주의(56건), 과징금(1,027억), 고발(2건)	

주1)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근거 신설(2021. 4. 6. 시행)
 (과태료) 2021. 4. 5. 까지의 위반행위에 부과 → 2026. 4. 5. 부과 종료(제척기간: 5년)
 (과징금) 2021. 4. 6. 이후 위반행위에 부과 → 2023. 3. 8. 최초 부과

(자료: 금융위원회)